

2023학년도 자체 정기감사 결과

2024. 02. 08.

세한대학교 혁신성과관리원

I 감사목적

1. 교육 및 연구 분야 비리 근절과 청렴한 대학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종 업무 추진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사전 예방 필요
2. 대학 행정업무의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의 방법, 자료, 정보의 제공으로 업무의 향상 도모 필요
3.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대학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감사에 앞서 선제적으로 점검하므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II 감사 중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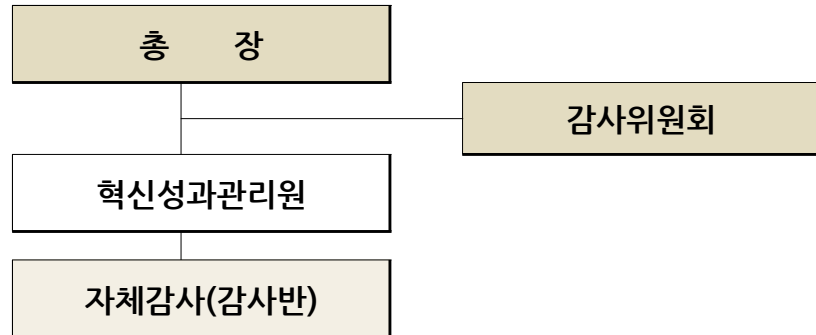
1. 감사 중점 사항
 - 가. 최근 3년간 부서운영계획 및 부서실적보고에 따른 부서별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점검
 - 나.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진단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정량 및 정성지표 제고 방안 업무추진 실적
 - 다. 부서 및 학과 운영 전반(교무, 학사, 회계, 복무, 민원 등)
2. 감사결과 후속 조치
 - 가. 부서 및 학과별 핵심성과지표 환류계획 달성 및 대외평가지표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의 제도 개선
 - 나. 대학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III 추진 계획

□ 추진 근거

-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446호, 2023.6.21.)
- 세한대학교 「감사 규정」

□ 추진 체계



□ 감사반 구성

- 감사반장 : 0000처장(000 처장)
- 감사반원 : 감사반장 포함 5명
- 감사반원의 점검 주요 임무

감사반원	직위	주요 담당 임무	비고
000 0000처장	감사반장	- 감사 총괄 - 교직원 근태 및 업무에 대한 현황 점검	
000 00처장	감사반원	-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연계 부서 및 학과운영 상황 점검 - 학과발전계획 및 특성화 운영현황 점검	
000 00부처장	감사반원	- 교무 및 학사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 교양 및 전공, 비교과 혁신 교육과정 운영 현황	
000 0000처 부처장	감사반원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 센터별 교육 및 학생지원 운영실적 점검	
000 000 부원장	감사반원 감사업무담당	- 부서별 통합일정 및 부서실적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 업무수행에 대한 의견수렴(애로점, 개선요구 사항) - 감사업무 행정지원	

□ 감사 수행기간

감사년도	감사 수행기간
2023학년도	2023.12.26.(화) ~ 12.28.(목) (3일간)

□ 감사 대상부서(기관) : 16개

구 분	대상 기관(부서)
2023학년도 감사대상 부서	교육지원처(교학과, 사무과, 세한봉사단,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직부, 체육부, 학술정보원), 산학협력단(영암), 대학원, 국제교류원, 공자아카데미, 한국어학당, 생활관, 평생교육원, 구암교양교육원, 전공교육혁신단

IV 자체 정기감사 결과

□ 감사결과 총괄

구 분	시정요구		개선요구		주의		경고	
	학과	행정부서	학과	행정부서	학과	행정부서	학과	행정부서
조치 건수	6	-	-	4	-	4	-	1

□ 감사처분 요구사항

구분	지적건명	처분	관련부서
학과	1. 학과 소통 및 회의록 작성 부실	시정	영암캠퍼스 전체 학과(지도관리:교무입학처) ※ 학과 소속 전체 교수들에게 대학의 주요현안 사항들이 전달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학과회의 활성화 방안 요구
행정부서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유지·관리 소홀 및 보고체계 미흡	경고	전) 000000 000 ※ 전) 00000 000 0장은 퇴직 불문
		개선	국제교류원

구분	지적건명	처분	관련부서
행정부서	2. 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일반 휴학) 신고 지연	주의	전) 000000 000 00000 직원 000 ※ 전) 00000 000 0장은 퇴직 불문
		개선	국제교류원(협조:교무입학처, 대학원)
	3. 전자출결관리 시스템 활용 미흡	개선	교무입학처(협조:정보전산실, 전체학과)
	4. 홈페이지 “열린세한대” 건의사항 대한 답변 지연	주의	0000(영암) 000 000000 000
		개선	교무입학처

□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

부서명	지적사항	처분부서 / 담당자	처분요구 사항
국제 교류원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유지·관리 소홀 및 보고 체계 미흡 가. 관련근거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3-388, 2023.10.19.) 나. 사실관계 : 위 관련으로 “2023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모니터링) 실태조사 6개 이행지표와 관련하여 “3.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2023.4.1.자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 기준으로 2023.1.1.부터 2023.8.31.까지 교육이수율이 80% 이상 되어야 하고, “4.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이수율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매학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60%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위반내용 : ① 2023학년도 여름학기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법령 이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실태조사 기간 중에 교육 이수율이 각각 80% 및 60% 이상을 채우지 못 하였으며, ②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인증대학 모니터링 심사에서 위의 2가지 지표가 미충족하여 탈락이 예상되었음에도 국제교류원장 변경(2023.10.4.)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종 결재권자(총장 및 부총장)에게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시 보고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향후 재발 방지대책 개선 요구)	국제교류원/ 전)0장 000 국제교류원/ 전)0장 000	경고 : 전)0000 0장 000 ※전)00000 000 0장은 퇴직 불문
		국제교류원	개선 요구

부서명	지적사항	처분부서 / 담당자	처분요구 사항
국제교류원	2. 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일반휴학) 신고 지연 가.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4(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 나. 사실관계 : 위 법률에 의거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①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및 ②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위반내용 : 0000학과 1학년 0000(국적:00000) 유학생이 2022.10.17.자로 학적변동(일반휴학)되었고, 0000학과 2학년 00000(국적:00000) 유학생은 2023.4.11.자로 학적변동(일반휴학) 되었음에도 0000학과(학과장 및 지도교수) 및 교무입학처(학적담당부서)에서 국제교류원에 통보하지 않아 위의 유학생에 대한 학적변동 신고를 2023.10.4.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당진출장소에 지연 신고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원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학적변동 처리 부서(대학원생-대학원, 학부생-교무입학처)와 협의를 통하여 유학생에 대한 학적변동 처리 전 또는 후에 국제교류원이 학적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학생 학적변동 처리 절차를 반드시 개선할 것 (예시, 학적변동 사항을 국제교류원에 서면 통보하거나 휴학 및 자퇴 등의 학적변동신고 서식에 유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원 담당자 확인 난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	국제교류원/ 전)0장 000 전)0장 000 직원 000	“주의” 전)000000 000 00(담당자) 000 전)00000 0장은 퇴직 불문
		국제교류원	개선요구 (협조:교무입 학처, 대학원)

부서명	지적사항	처분부서 / 담당자	처분요구 사항
교무입학처	3. 전자출결관리 시스템 활용 미흡 가. 사실관계 - 학생 출결관리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사행정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정착을 위하여 학사에 관한 규정 제37조, 수업관리지침 제12조,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계획, 협조전을 통하여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전자출결 앱 사용 안내를 통하여 교원과 학생은 전자출결 앱을 반드시 설치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학생 전자출결 사용 매뉴얼을 탑재하여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한 바 있음 - 2023학년도 2학기 말 현재 전자출결 시스템 활용율은 별표와 같이 태권도 학과 등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활용율을 보인 반면, 0000000학과와 0000학과 등의 경우에는 5% 미만의 낮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는 등 전체 평균 26.6%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활용 이유에 대한 학과의 의견을 접수한 바 불임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출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자 및 부서 의견 - 각 학과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이 활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교무입학처 (협조:정보전산실 및 전체 학과)	개선요구 (협조: 정보전산실 및 전체학과)

부서명	지적사항	처분부서 / 담당자	처분요구 사항																																																																							
영암캠퍼스 전체학과 (00학과, 0000 학과, 0000과, 0000 과, 0000000학 과, 00000학과)	4. 학과 소통 및 회의록 작성 부실 가. 관련근거 :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 교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사실관계 - 학과장은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당해 학과의 교육과정의 교과목 설강, 학년별 지도교수 선정의뢰 등 학과(전공)관련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고 학과 회의를 통하여 소속 교원과의 의사소통 및 대학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과회의록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학과에서는 매주 개최되는 보직자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사항 및 총장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 교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학운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학과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임	전체 학과장 (교무입학처 지도 관리)	시정요구 (교무입학처 지도 관리)																																																																							
	<table><tr><th colspan="2">구분/학과</th><th>00</th><th>0000</th><th>0000</th><th>0000</th><th>000 00</th><th>00 000</th></tr><tr><td rowspan="4">22 학 년 도</td><td>1분기</td><td>1</td><td>1</td><td></td><td>1</td><td>3</td><td></td></tr><tr><td>2분기</td><td></td><td></td><td></td><td>1</td><td>1</td><td></td></tr><tr><td>3분기</td><td></td><td>1</td><td></td><td></td><td>1</td><td>1</td></tr><tr><td>4분기</td><td>1</td><td>1</td><td></td><td>1</td><td>1</td><td></td></tr><tr><td rowspan="4">23 학 년 도</td><td>1분기</td><td>1</td><td>2</td><td>1</td><td>1</td><td>2</td><td>1</td></tr><tr><td>2분기</td><td>1</td><td></td><td></td><td></td><td></td><td></td></tr><tr><td>3분기</td><td></td><td>1</td><td></td><td></td><td>2</td><td></td></tr><tr><td>4분기</td><td>2</td><td>3</td><td></td><td></td><td>2</td><td></td></tr><tr><td colspan="2">총개최 회수</td><td>6</td><td>9</td><td>1</td><td>4</td><td>12</td><td>2</td></tr></table>			구분/학과		00	0000	0000	0000	000 00	00 000	22 학 년 도	1분기	1	1		1	3		2분기				1	1		3분기		1			1	1	4분기	1	1		1	1		23 학 년 도	1분기	1	2	1	1	2	1	2분기	1						3분기		1			2		4분기	2	3			2		총개최 회수		6	9	1
구분/학과		00	0000	0000	0000	000 00	00 000																																																																			
22 학 년 도	1분기	1	1		1	3																																																																				
	2분기				1	1																																																																				
	3분기		1			1	1																																																																			
	4분기	1	1		1	1																																																																				
23 학 년 도	1분기	1	2	1	1	2	1																																																																			
	2분기	1																																																																								
	3분기		1			2																																																																				
	4분기	2	3			2																																																																				
총개최 회수		6	9	1	4	12	2																																																																			

부서명	지적사항	처분부서 / 담당자	처분요구 사항
생활관 (영암) 국제교류원	5. 홈페이지 “열린세한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지연 가. 관련근거 : “열린세한대” 개설 운영 계획 (2020.3.1.) 및 교무입학처-4393(2023.8.1.) 나. 사실관계 : 위 관련으로 홈페이지 “열린세한대” 관리계획 안내 및 건의사항 답변 협조 요청[교무입학처-4393(2023.8.1.)]에 의거 구성원들의 다양한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열린세한대”에 신고된 불편사항 등은 교무입학처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 위반내용 : ① “영암캠퍼스 학식 운영 제발 바꿔주세요” (작성자 : 000, 작성일 : 2023.00.00., 조회수 : 304회),(총괄부서인 교무입학처에서 2023.11.29. 및 12.5. 2회에 걸쳐 답변 협조 요청) 및 ② ” 외국인에 대한 예의 범절 교육 및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작성자 : 000, 작성일 : 2023.00.0., 조회수 : 35회)에 대한 불편신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①번은 40일 경과, ②번은 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12. 26. 현재 까지 답변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열린세한대 게시글에 대한 답변기한 명시, 부서장 주1회이상 확인, 총괄부서 주1회 모니터링 실시 등의 개선 조치 필요)	00관(영암) /0장 000 0000원/ 0장 000	주의
		교무입학처	개선요구 (기 운영 제도의 보완 개선)